Ⅱ. 퇴직연금 재정평가의 개념 및 절차

1. 퇴직연금 재정평가 개념 및 특징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재정평가(Funding Valuation)란 정부나 기업이 일정한 법적·제도적 틀 하에서 상시적으로 연금재정을 검증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면서 안정적으로 연금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의 입장에서의 재정평가와 정책당국의 법적·제도적 장치에 의한 재정평가가 필수적이다. 전자인 기업입장에서의 재정평가는 결국 자사의 부채구조를 고려한 연금자산 운용의 적정성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리스크관리라는 의미를 다분히 지니고 있는 반면, 후자인 정책당국입장에서의 재정평가는 법적·제도적장치에 의해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유도하는 점에서 정부의 리스크감독 및 규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Risk Management)개념이 종래 해당보험회사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리스크통제(Risk Control)뿐만 아니라 최근에서는 리스크감독 및 재무(Risk Financing)개념, 즉 감독당국이 법적·제도적으로 시행하는 리스크중시의 감독 및 검사체계 등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퇴직연금 재정평가는 정부의 연금재정 건전성 평가이외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는 개별기업이 자사의 요율지표(예정이율, 예정사망율, 예정승급률 및 예정탈퇴율 등과 같은 다원화된 계산기초율)를 고려하여 장래 자사의 연금재정 적정성여부를 사전에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 그리고 감독규정상에 있는 연금재정의 건전성 관련 규정 및 정책 등은 직접적으로 연금재정의 건전성평가와 관련성이

있다[18]. 이에 반해 개별기업의 인적구조를 고려하여 적정한 연금적정성 평가모델(연금수리모형)을 선택하는 일련의 과정은 연금재정의 적정성 평가(또는 연금ALM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존재한다. 연금재정의 적정성평가는 기업의 특성에 부합한 모델을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점에서 도달연령방식 등과 같은 재정방식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게 된다. 그 이유는 기업의 특성과 부합한 연금재정방식의 선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의 리스크관리는 사실상 요원하기 때문이다.

<그림 II-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재정평가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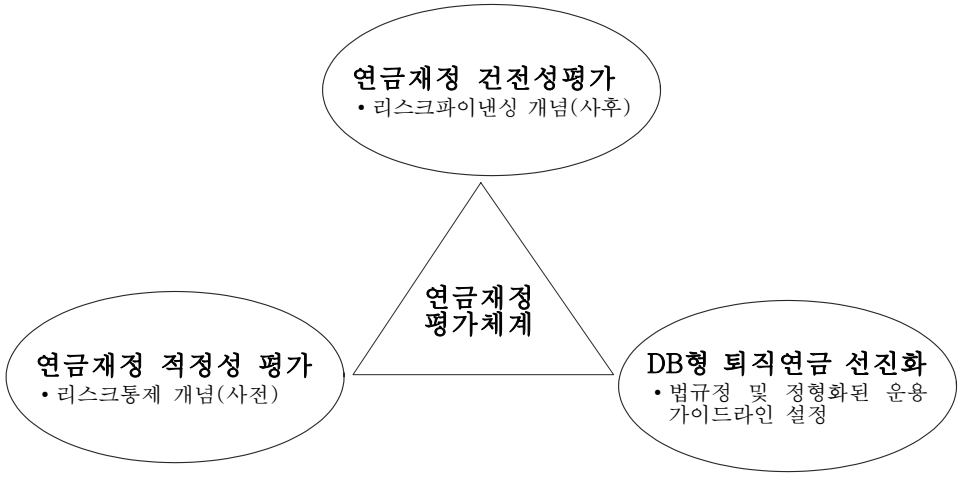

<그림Ⅱ-1>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재정평가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즉 <그림Ⅱ-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재정평가체계는 일반적으로 ① 연금재정의 건전성 평가체계 ② 연금재정의 적

18) 예를 들면 연금재정의 검증규정, 연금재정의 검증주체측면, 과거근무채무상각관련 규정, 적립과부족시의 시정조치 관련 규정, 연금재정의 재계산 관련 규정 및 연금지급급부 관련 규정 등과 연금재정의 건전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감독정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정성 평가체계로 보고 있지만[19], 최근에는 ③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가이드라인의 설정 등도 퇴직연금의 재정평가체계 범주로 보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연금재정의 건전성평가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메리트보다 증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금재정의 정형화된 건전성평가체계 구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강점이 있는 보험회사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20]. 즉 연금재정의 건전성평가체계는 보험회사의 제도설계 및 컨설팅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표 II-1> 연금재정의 평가체계 특징

	연금재정의 평가체계	
	규제감독적 측면(감독당국)	경영전략적 측면(기업)
구분	연금재정의 건전성 평가 (계속기준, 비계속기준 등)	연금재정의 적정성평가 (연금부채대비 연금자산변동)
개념	Risk Finance(STOCK)	Risk Control(FLOW)
변수	각출정책, 제도종료 및 보험료재계산 정책 등	재정방식(계산기초율) 등
고려사항	연금의 건전성 등	재정부담, 인적구조 등
보험사	컨설팅 간접 영향	컨설팅 직접 영향
	DB형체계의 정형화 → 보험사수탁증대 → 퇴직연금 보험사우위 확보	

19) 협의로는 연금재정의 건전성평가체계와 연금재정의 적정성평가체계를 연금재정의 평가체계로 불리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협의의 개념을 연금재정의 평가체계로 보고자 한다.

20) 이는 확정급여형 성격을 지닌 기존의 퇴직보험(신탁)시장에서 약 80%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정형화된 연금재정의 건전성평가체계하에서 보험회사는 기업이 적정한 연금재정평가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금제도를 설계해주고 상시적으로 자문해 줌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장에서의 보험회사 수탁기능을 보다 제고시켜 나아가는 전략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다(<표Ⅱ-1>참조).

2. 퇴직연금 재정평가 단계 및 절차

가. 퇴직연금 재정평가 단계

퇴직연금의 재정평가단계는 크게 퇴직연금제도의 선택과 관련된 재정평가단계(사전적 재정평가단계)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재정평가단계(사후적 재정평가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퇴직연금제도의 선택과 관련된 재정평가평가 단계는 기업별로 복리후생제도, 노사관계, 재정상태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목적이 개별기업마다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도 옵션, 즉 ① 현행 법정퇴직금제도의 존속 ②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100% ③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100% ④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 퇴직금(과거분) ④ 기타 등과 같은 옵션 중에서 어떠한 방식으로의 전환이 가장 바람직한지를 특히 퇴직연금의 재정평가차원에서 충실히 자문하여 줌으로써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금재정 건전성평가체계의 특징 등을 통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시의 제반효과를 근로자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사전적 재정평가단계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유도와 관련된 연금제도설계의 사전적 준비단계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재정평가단계는 기업의 특

성에 부합한 연금재정의 적정성 평가모델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의한 연금재정 적정성 여부를 어떻게 검증하여야 하는 단계이다. 즉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선택시 기업의 특성에 부합한 재정평가모형의 설계, 효과, 재정추이 등을 통해 제도운용관점에서 재정평가를 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후적 재정평가단계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이 확정된 이후, 기업의 특성에 부합한 연금재정의 적정성 평가모델을 선택하게 되는 단계라는 점에서 사전적 재정평가단계와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나. 퇴직연금 재정평가 절차

퇴직연금 재정평가 단계와 관련하여 퇴직연금 재정평가 절차를 요약·정리하면 <표Ⅱ-2>와 같다. 퇴직연금 재정평가 절차는 크게 3가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즉 ① 기업환경을 고려한 확정급여형 선택절차 ② 연금재정의 적정성 평가절차 ③ 연금재정의 건전성 평가절차 순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표 II-2> 연금재정평가 절차

절차Ⅰ	기업특성	가입자성향	경영전략목표
	확정급여형 선택(확정기여형 배제)		
절차Ⅱ	피보험자수	수급권보호	기업재정부담
	연금재정의 적정성평가(운용측면)		
절차Ⅲ	연금재정의 건전성평가(검증측면)		

첫 번째의 연금재정평가 절차에서는 기업내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기업외부적인 요인까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해당기업의 특성, 향후의 경영전략 목표 등과 같은 기업내부적 요인도 연금재정평가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노동 및 금융시장의 환경변화 등도 함께 고려하여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해당기업의 연금재정 흐름을 파악하여야 한다는 점이다[21].

두 번째의 연금재정평가 절차에서는 개별기업의 피보험자수, 기업의 재정부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러 연금재정 적정성평가모델 중 가장 적합한 모델을 그룹화하고, 이 모델의 적정성을 부채구조(Liability Management)와 자산구조(Asset Management)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부채구조의 변화를 신중히 고려하여 모델의 판단과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의 연금재정평가 절차에서는 연금재정의 건전성평가를 통하여 연금재정의 적정성평가결과를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즉 연금재정의 건전성평가결과,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원인분석 및 연금재정 적정성평가방법 변경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연금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결국 연금재정의 건전성평가 결과가 적정성평가체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3. 퇴직연금 재정평가체계의 구축 필요성

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안정화기반 구축

퇴직연금제도 중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연금재정의 건전성관련 규정이 정형화

---

2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선택여부는 어떤 면에서 금융시장의 환경변화, 노동시장의 구조 등과 같은 기업외부적 요인에 의해 보다 좌우될 수 있다.

되고 자사의 특성에 부합한 연금제도의 설계, 즉 연금재정의 적정성평가모델 선택이 가능해 져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수급권보호측면에서 연금재정의 건전성관련 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 역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선택의 유인효과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22] 따라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확보하여 충실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금재정의 평가체계가 법적·제도적으로, 그리고 연금제도의 설계시스템 측면에서 사전에 정비될 필요성이 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보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에게 운영리스크부담이 있으며, 연금재정의 건전성 감독책임이 정책당국에 있기 때문에 정형화된 연금재정의 평가체계구축을 통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의한 재무건전성확보가 특히 요구된다. 결국 규제감독측면에서의 재정 평가장치 마련과 더불어 기업특성을 고려한 연금재정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DB형 퇴직연금제도 운용의 안정적 기반 확보 및 제도의 선진화도모가 필요하다.

나. 연금재정 검증체계의 선진화 지향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보다 체계화된 연금재정평가 프로세스의 구축 등으로 안정화된 재정운영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한 근로자의 수급권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니드가 존재하게 된다. 즉 ① 보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연금자산에 의해 연금급부의 안전성을 증대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별에 따른 연금재정의 적정성검증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점 ② 기업의 특성에 맞게 매년 합리적으로 연금비용을 배분함으로써 상이한 세대에 속하는 근로

22) 이는 과도하지 않은 연금재정의 건전성규제하에서 가능하다. 그 이유는 너무 과도한 연금재정의 건전성규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회피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및 주주간의 형평성을 적극 도모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 ③ 과거 근무채무 등 미적립 채무를 연금재정의 적정성평가방법에 의해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변화시킴으로써 각출기간을 상당하게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점 ④ 새로운 제도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전 근무기간에 걸쳐 적절하게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이 기업입장에서의 연금재정 평가체계 구축필요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여러 시나리오별에 따른 연금재정의 건전성변화정도는 기업이 향후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결정적인 판단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연금재정의 검증체계 구축은 연금재정 검증체계의 선진화에 기여하게 된다.

다.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시장 컨설팅능력 강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연금재정의 평가체계 구축은 직간접적으로 보험회사의 컨설팅 능력 강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이유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성이 확보된 가운데, 다양한 퇴직연금 재정의 평가모델을 통하여 예정이율, 예정사망율 등과 같은 연금계산기초율 변화를 기초로 연금재정의 민감도 분석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은행 등 타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금제도의 설계능력이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연금제도의 설계능력 강화는 필연적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장에 대한 보험회사의 위상제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장이 보험회사의 안정적인 이익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수 있다.

즉 은행 등과 차별화된 연금재정의 적정성 평가방법, 자문능력 등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장에서의 보험회사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체계화된 연금재정의 평가체계 마련여부는 향후 보험회사의 주요한 과제로 부각될 것이다. 그 이유는 연금재정의 평가체계 구축여부가 수탁기관의 능력을 판단하는 주요 잣대로 평가되고, 이

를 통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선호도 증대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 사전적으로 선진형 퇴직연금시장으로의 전환대비

도입될 퇴직연금제도는 법정 퇴직금제도하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임의 선택형 퇴직연금제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의 상황하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금재정의 평가체계구축 필요성이 낮을 수도 있다. 그 이유는 특정연령방식 등과 같은 단일화된 재정방식을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연금수급 니드를 고려한 보험료갹출 및 재정방식의 적용면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정퇴직금제도의 선택이 점차로 축소되고 폐지되는 경우, 그리고 선진국처럼 퇴직연금제도의 유형이 다양화되어 가는 경우, 선진화된 연금재정 평가체계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한 연금재정의 평가체계마련은 선진화된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적극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할 과제라 할 수 있다.